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 수 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형태 (광역형 또는 도시형)	예정 노선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대수
	사업기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공통	1. 운송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도 5.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